

#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 안 번호	2493
-----------	------

제출년월일 : 2018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예비비 예산액 2,088억 7,400만원 중 104억 6,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2억 2,700만원을 지출함

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1,740억 1,600만원
- 지출결정액	45억 4,800만원
- 지출액	43억 1,4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2억 3,400만원임.

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67억 3,800만원
- 지출결정액	0원
- 지출액	0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은

- 예비비 예산액	281억 2,100만원
- 지출결정액	59억 1,400만원
- 지출액	59억 1,400만원
- 이월액	0원
-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은	0원임

### 3.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마.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시장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 ② 검사위원회는 시장 등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 ③ 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바.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① 검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등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결산 개요
  - 2. 세입·세출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서울특별시 등의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사.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비 사용명세서

## 일반회계

(단위 : 원)

과		목		지출결정액 ㉑	지출원인액 ㉒	지출액 ㉓	이월액 ㉔	집행잔액 ㉕-㉖-㉗-㉘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4,547,756,000	4,314,194,120	4,313,489,120		234,266,880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일반행정	민사, 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2,163,815,000	2,163,815,000	2,163,815,000			2017-12-21	2017-12-29	공익사업 주택특별공급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일부패소 판결금관련 예비비 사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	소송판결금 지급	배상금등	215,762,000	215,761,390	215,761,390		610	2017-05-16	2017-05-19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사·자치구간 소통통합 협력체계 강화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7,000,000	4,860,000	4,860,000		2,140,000	2017-01-26	2017-02-08	시 관련 가금류 구매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4,519,000	14,519,000	14,519,000			2017-03-29	2017-03-31	시의원 보궐선거(구로구 제3선거구) 선거비용 납부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159,585,000	139,660,090	139,660,090		19,924,910	2017-06-20	2017-06-26	'17년 시의원 보궐선거(구로구 제3선거구)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방재·민방위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등	사무관리비	20,000,000	20,000,000	19,295,000		705,000	2017-11-27	2017-11-27	지진안전점검단 운영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배상금등	391,000,000	391,000,000	391,000,000			2017-04-17	2017-04-17	서부도로사업소 손해배상 판결금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금	427,139,000	215,644,000	215,644,000		211,495,000	2017-12-14	2017-12-15	주거급여 부족예산(국고보조금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도시기반시설본부 기획예산과	도로	용허리공원빗물저류 조설치공사 공사대금지급(민사소)	배상금등	227,107,000	227,106,410	227,106,410		590	2017-02-13	2017-02-14	용허리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공사대금 지급 건
환경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소송비용	배상금등	453,047,000	453,046,330	453,046,330		670	2017-02-13	2017-02-14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환경사업본부 기획예산과	환경보호일반	소송 관련 비용	배상금등	468,782,000	468,781,900	468,781,900		100	2017-03-27	2017-03-28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집행잔액 마-가-다-라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634,539,000	634,409,100	634,409,100		129,900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역및도시	소송비용	배상금등	634,539,000	634,409,100	634,409,100		129,900	2017-10-17	2017-10-20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은평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가	지출원인 행 위 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집행잔액 마-가-다-라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합 계				5,279,404,000	5,279,403,300	5,279,403,300		700			
푸른도시국 조경과	지역및도시	소송비용 등(도시개발)	배상금등	289,116,000	289,115,300	289,115,300		700	2017-10-16	2017-10-18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비용 지급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	도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	4,990,288,000	4,990,288,000	4,990,288,000			2017-12-14	2017-12-22	서울역 고가공원의 추가공사에 따른 시급한 사업비 확보